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673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백혜련・홍기원・손 솔
전용기・한준호・박상혁
강준현・백선희・이재강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「모자보건법」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,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・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「모자보건법」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63호)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63	「모자보건법」 제22조	사용료등의 감면	2031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